

CONTENTS

I

사업개요

II

청년 석·박사 연구인력

III

기술전문경력인 활용지원

IV

추진체계 및 절차

V

신청 및 평가방법

VI

유의사항 및 향후 일정

I 사업개요

기간/예산

2021.1~12(12개월) / 1,863백만원

지원대상

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보유 초기 중견기업

❖ 초기중견기업 : 최근 3개년('18~'20) 매출액 평균 3천억원 미만 기업

지원인력

청년 석·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

❖ 청년으로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(청년기준 :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~만 39세)

❖ 기업, 공공연, 대학 등의 연구경력을 지닌 기술전문 연구인력 (연구경력 학사 10년, 석사 7년, 박사 3년 이상인 자)

지원내용

초기 중견기업이 청년 석·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 시 **최대 3년간 계약연봉의 40% 이내 지원(출연)**

❖ 최대 2년 + 1년 연장(연장심사를 통해 추가지원 여부 결정)

❖ 기업별 최대 2명까지 지원(단, 경력인은 1명) / 채용인력은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&D 프로젝트 제출

| 구 분 | ①청년 석·박사 연구인력 | | ②고경력 연구인력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석 사 | 박 사 |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|
| 정부지원액/年 | 계약연봉 대비 40% 이내 지원 | | |
| 최소 기준연봉 | 3,400만원 이상 | 3,600만원 이상 | - |
| 지원한도 | 1,600만원 | 2,000만원 | 2,800만원 |

II

청년 석·박사 연구인력



II 청년 석·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(Track 1)

1 지원규모

- 1,366백만원 (신규 48명 / 계속 56명 (석사 29명, 박사 19명))
- ✓ 기업별 최대 2명 이내 지원 (기술전문 경력인 1명 채용 시 1명 이내 지원)

2 지원대상

-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보유 초기 중견기업
- ✓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
- ✓ 초기중견기업 : 상기에 부합하며 최근 3개년('17~'20) 매출액 평균 3천억 미만

3 지원인력

- 청년으로 이공계 석·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
- ✓ 청년기준 :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~만 39세

4 지원내용

- 청년 석·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, **계약연봉의 40% 이내 지원**
- ✓ 인원 : 기업별 최대 2명까지 지원
- ✓ 기간 : 최대 3년으로 최초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
- ✓ 지원금액

| 구분 | 석사 | 박사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최소 기준연봉 | 3,400만원 | 3,600만원 |
| 정부 지원비율 | 계약연봉 대비 40% 이내 지원 | |
| 연봉 지원한도 | 1,600만원 | 2,000만원 |

5 지원조건

- 지원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에 배치, 연구인력으로 활용
- 채용된 연구인력은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&D프로젝트 제출

Ⅲ 기술전문경력인 활용 지원(Track 2)

1 지원규모

- 447백만원 (신규 6명 / 계속 14명)
- ✓ 기업별 1명 이내로 지원 (필요시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1명 지원 가능)

2 지원대상

-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보유 초기 중견기업
- ✓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
- ✓ 초기중견기업 : 상기에 부합하며 최근 3개년('17~'20) 매출액 평균 3천억 미만

3 지원인력

- 이공계 출신으로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,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, 석사 7년, 박사 3년 이상인 연구인력
- ✓ 기술애로, 기술지도, 공동연구개발 등 성과창출이 높은 이공계 연구년 교수 포함

4 지원내용

- 경력직 연구인력 채용 시, **계약연봉의 40% 이내 지원**
- ✓ 인원 : 기업별 최대 1명까지 지원
- ✓ 기간 : 최대 3년으로 최초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
- ✓ 지원금액

| 구분 | 기술전문 경력인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최소 기준연봉 | 별도기준 없음 |
| 정부 지원비율 | 계약연봉 대비 40% 이내 지원 |
| 연봉 지원한도 | 2,800만원 |

5 지원조건

- 지원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에 배치, 연구인력으로 활용
- 채용된 연구인력은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&D프로젝트 제출



* 상하반기 2회 모집(각 27명씩)

신청 방법

- ◆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www.kiat.or.kr)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(www.fomek.or.kr) 사업공고 확인
 - 첨부파일의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접수
- ◆ 온라인 접수 : 사업 담당자 이메일(jiyeonlee@fomek.or.kr)로 서류 제출
- ◆ 유의사항
 -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, 위. 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예 의거,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 - 마감 당일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

평가 방법

- ◆ (조건심사) 신청자격 조건 충족 여부, 제출 서류
- ◆ (서면평가) 기업지표(재무건전성, 고용증가율 등), 연구개발지표(R&D, 채용인력 활용성 등), 가산점 등

| | | | | |
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기업지표 | 합계 | 성장성 | 안정성 | 고용증가율 |
| | 70점 | 30점 | 20점 | 20점 |
| 연구개발지표 | 합계 | R&D 집중도 (투자(인력) 비중 등) | 연구개발 수행계획 구체성 | 채용인력 활용성 |
| | 30점 | 5점 | 5점 | 20점 |
| 합계 | 100점 | | | |

* 가산점 별도 부여(최대 10점) ('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' 별도 참조)

VI

유의사항 및 향후 일정



유의사항

◆ 지원제외

- ✓ 現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지원사업, 舊 혁신형 중소·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(~'17),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,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, 퇴직과학기술자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
- ✓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을 넘는 중견기업
- ✓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재입사자 (단, 최초 입사일이 신청조건일자 이후 이거나,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시 예외)
- ✓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, 받을 예정인 자(이중수혜 불가)
 - * 타 사업에서 인건비성 경비(R&D, 보조금, 연구수당, 고용장려금 등)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(단, 교육·훈련 경비는 지원가능)
- ✓ 신청일 현재 군복무(전문연구요원 포함) 또는 예정자
- ✓ 한국인(한국 국적)이 아닌 자

유의사항

◆ 지원제외

✓ 신청 기업이 아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

- 기업의 부도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신청기업, 대표자,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경우
(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)
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.
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향후 일정

| 구분 | 일정 | 주요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시행계획 수립 | 12월 | ▶ 시행계획(2021년 추진계획) 확정 |
| 상반기 사업공고 | 12월 | ▶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 - 석·박사 24명, 기술경력인 3명 |
| 평가 및 협약체결 | 2월未~ 3월初 | ▶ 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- 사전검토 및 외부전문가 평가 |
| 참여기업 간담회 | 4월 | ▶ 의견수렴 및 사업 개선사항 청취 |
| 하반기 사업공고 | 5월 | ▶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- 석·박사 24명, 기술경력인 3명 |
| 평가 및 협약체결 | 5월未~ 6월初 | ▶ 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- 사전검토 및 외부전문가 평가 |
| 성과분석 | 6월~9월 | ▶ 고용유지율, 만족도 등 조사 |
| 실사, 최종 평가, 정산 등 과제 관리 | 수시 | ▶ 현장실사, 최종(연장)평가 |

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

우대사항(1)

신청기업 진출분야, 장기재직인센티브 여부,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 등 해당 시 가점 부여(최대 10점)하되,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기업은 가점 불인정

- ①~⑧항목 최대 7점까지만 부여 + ⑨항목 5점 부여 = 총 10점

1

신산업분야
(2점)

▪ 소재부품장비 6대분야와 '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('20~24)에서 제시한 산업통상자원부 3대 신산업분야

- ✓ 6대 소재부품장비 분야 : ① 반도체 ② 디스플레이 ③ 자동차 ④ 전자전기 ⑤ 기계금속 ⑥ 기초화학
- ✓ 3대 신산업 분야 : ① 미래차 ② 시스템반도체 ③ 바이오헬스

2

기업관련
(2점)

- ① 지방소재(본사 혹은 연구소) 중견기업 ② 여성기업 인증기업
- ③ World Class 300 지정 기업 ④ 중견기업상생혁신(R&D) 선정 기업
- ⑤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/ ATC 지정 기업 ⑥ 한독센터 참여기업
- ⑦ 등대프로젝트(사업재편, 디지털전환, 글로벌진출 등) 참여기업

3

인력관련
(2점)

- ① 여성인력
- ② 지방소재(본사 혹은 연구소) 중견기업의 해당 소재지(시, 도 지자체) 인력 채용

4

장기재직
인센티브
(2점)

※ 장기재직 인센티브 적용은 신청인력에 대해 가입 및 부여한 경우에 한함

- ① 내일채움공제 / 청년내일채움공제 ② 스톡옵션

* 신청인력에 대해 가입 및 부여한 경우에 한함

우대사항(2)

- 5 장기재직 연구인력 (최대 3점)

※ 기존 수혜 기업이 사업종료 후 신규 신청할 경우에 한함
① 본 사업으로 채용된 인력이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(2점)
② 본 사업으로 채용된 인력이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(2점)
- 6 일자리 우수기업 (2점)

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② 노사문화 우수기업
- 7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(2점)

① Leading Korea Job Festival (한국산업기술진흥원)
②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(한국중견기업연합회)
- 8 지역 유관기관(대학, 상의, 테크노파크 등) 추천 기업 (3점)
- 9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(예정) 인력 (5점)

제출서류

| 구분 | 번호 | 제출서류 | 수량 |
|----------|----|---|------|
| 공통 서류 | ① | 지원사업 신청서 | 1부 |
| | ② | 연구사업 개요서 | 1부 |
| | ③ | R&D 역량 및 지원인력 R&D 프로젝트 추진계획서 | 1부 |
| | ④ |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| 1부 |
| | ⑤ | 지원기업 서약서 | 1부 |
| | ⑥ | 월별 급여지급 계획서 | 1부 |
| | ⑦ | 사업자등록증 사본 | 1부 |
| | ⑧ | 법인등기부등본 | 1부 |
| | ⑨ |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) 인증서 사본 | 1부 |
| | ⑩ | 연구개발 인력현황 사본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) | 1부 |
| | ⑪ | 최근 3개년도('17~'19)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※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'표준재무제표증명' 또는 '재무제표 확인' 페이지를 포함 제출 | 각 1부 |
| | ⑫ |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귀속연월 '17.12, '18.12, '19.12, 세무서 발행본) ※ 종사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| 각 1부 |
| | ⑬ |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※ (국세)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, (지방세) 정부24(www.gov.kr) | 각 1부 |
| | ⑭ |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(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) ※ 확인서 상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 必 | 1부 |
| | ⑮ | 신청인력의 최종 학위증명서(개인발급) | 1부 |
| | ⑯ | 고용보험이력내역서 (개인발급) ※ 자격이력내역서(근로자용) 근로복지공단 발급 | 1부 |
| | ⑰ | 신청인력의 연봉계약서(신청일 기준) 사본 | 1부 |
| 해당시 제출 | ⑱ |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※신청인력에 해당하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(내일채움공제 등은 가입 내역 증빙) | 각 1부 |
| | ⑲ | 경력기술서(경력직, 개인발급) ※ 자율양식으로 경력기간내 연구활동 내역에 대해 기재 | 1부 |

- ❖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개별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(파일명 앞에 반드시 번호 부여)
- ❖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